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전문직공무원확대를위한23개
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총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3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조달청, 병무청,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제4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제14조·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1명)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16명(5급 2명, 6급 14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조).

다. 교육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2조).

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5급 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소속기관을 추가함(안 제3조).

마. 국방부의 정원 9명(5급 5명, 6급 4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4조).

바. 행정안전부의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함(안 제5조).

사. 국가보훈부의 정원 1명(5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3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16명(5급 5명, 6급 1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7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6급 7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8조).

차. 산업통상부의 정원 6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32명, 6급 2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함(안 제9조).

- 카. 무역위원회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함(안 제10조).
- 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38명(5급 38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함(안 제11조).
- 파.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6급 5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95명(6급 95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함(안 제12조).
- 하. 해양수산부의 정원 2명(5급 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6명(5급 1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3조).
- 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3명(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4조).
- 너. 인사혁신처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5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3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함(안 제15조).
- 더. 국가데이터처의 정원 5명(5급 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6조).
- 러. 지식재산처의 정원 105명(5급 10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7조).

- 며. 조달청의 정원 4명(6급 4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8조).
- 버. 병무청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19조).
- 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20명(6급 20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20조).
- 어. 질병관리청의 정원 9명(5급 9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21조).
- 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20명(5급 14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22조).
- 처.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안 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6. 10.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국제협력관, 인공지능정책실에 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760”을 “752”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8”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022”를 “1,00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6”을 신설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고등평생정책실에 두는 대학지원관, 영유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566”을 “559”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7”을 신설한다.

제3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정세분석국”을 “정세분석국 및 남북회담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73”을 “171”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2”를 신설한다.

제4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군인권개선추진단, 인사복지실에 두는 보건복지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및 국방정보화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80”을 “671”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직공무원 9”를 신설한다.

제5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전단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인공지능정부실에 두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인공지능정부기반국,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613”을 “1,600”으로, 전문직공무원 “13”을 “26”으로 한다.

제6조(「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보상정책국 및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329”를 “328”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127”을 “1,124”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3”을 신설한다.

제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두는 콘텐츠산업정책관,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68”을 “652”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6”을 신설한다.

제8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에 두는 국제농식품협력관, 동물복지정책국, 방역정책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47”을 “644”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3”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2,619”를 “2,612”로 하고, “전문직공무원 7”을 신설한다.

제9조(「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을 “산업정책실에 두는 지역경제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성장실에 두는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산업자원안보실에 두는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에 두는 신통상전략지원관,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에 두는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759”을 “699”로, 전문직공무원 “18”을 “78”로 한다.

제10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를 “덤핑조사과, 덤핑조사지원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로 한다.

별표 1 중 4급 이하 “52”를 “45”로, 전문직공무원 “5”를 “12”로 한다.

제11조(「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정책실에 두는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 두는 전력산업

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기위원회 사무국 및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고, “두는 정책관등 및”을 “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4 중 3급 또는 4급 이하 “791”을 “753”으로, 전문직공무원 “17”을 “55”로 한다.

제12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근로기준정책관”을 “근로기준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두는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안전보건감독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24”를 “619”로, 전문직공무원 “3”을 “8”로 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9,447”을 “9,352”로, 전문직공무원 “4”를 “99”로 한다.

제13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594”를 “592”로, 전문직공무원 “2”를 “4”로 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2,920”을 “2,904”로, 전문직공무원 “6”을 “22”로 한다.

제14조(「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소기업정책실에 두는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술혁신정책관, 창업벤처혁신실에 두는 창업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492”를 “489”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3”을 신설한다.

제15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인재정보기획관 및 인재채용국”을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채용국, 윤리복무국 및 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대통령령 제367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3급 또는 4급 이하 “394”를 “387”로, 전문직공무원 “10”을 “17”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63”을 “1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3”을 신설한다.

제16조(「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계서비스국,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두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95”를 “69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5”를 신설한다.

제17조(「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610”을 “1,505”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05”를 신설한다.

제18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획조정관 및 디지털정책조정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553”을 “549”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4”를 신설한다.

제19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병역자원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

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285”를 “275”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직공무원 10”을 신설한다.

제20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46”을 “626”으로, 전문직공무원 “57”을
“77”로 한다.

제21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74명(5급 46명”을 “65명(5급 37명”으로 하고, 제35조
제3항 중 “37명(5급 19명”을 “36명(5급 18명”으로 한다.

제6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
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
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
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안전예방국 및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4 중 3급 또는 4급 이하 “471”을 “462”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9”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3급 또는 4급 이하 “900”을 “899”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을 신설한다.

제22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

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경쟁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및 경제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709”를 “689”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20”을 신설한다.

제23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

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33,031”을 “33,01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8”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중 대통령령 제367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 합격자 수가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수에 미달하여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2029년 11월 5일까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지식재산처에, 2028년 11월 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및 우정사업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전직시험 이후 해당하는 존속기간까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영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가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발생한 합격자 수만큼 감소한다.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호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2조 관련)

총 계	420
정무직 계	1
처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19
고위공무원단	9
3급 또는 4급 이하	386
전문직공무원	17
전문경력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 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 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 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 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 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국 제협력관, 인공지능정책실에 두 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

능인프라정책관,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u> <u>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u> <u>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고등평생정책실에 두는 대학</u> <u>지원관, 영유아정책국 및 인공</u> <u>지능인재지원국 외에 배정할 수</u> <u>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u>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u>정세분석국</u>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정세분석국</u> 및 남북회담본부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포함한 다) 및 제29조의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u> <u>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u> <u>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군인권개선추진단, 인사복지</u> <u>실에 두는 보건복지관, 국방인</u> <u>공지능기획국 및 국방정보화국</u> <u>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u>

<u>제27조의2</u>(평가대상 조직) ① ~ ② (생략)	<u>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u> <u>제27조의3</u>(평가대상 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u>포함한</u> <u>다</u>),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③ ----- ----- ----- ----- ----- ----- ----- <u>포함</u> <u>한다</u>) 및 제29조의2----- -----.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보상정책국 및 보훈심사위원</u> <u>회 사무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u>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2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두는 콘</u> <u>텐츠산업정책관, 문화산업미디</u> <u>어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및 국</u>

제문화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 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 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 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 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 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기획조정실장에 두는 국제농 식품협력관, 동물복지정책국, 방역정책국 및 농림축산검역본

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u>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u>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산업정책실에 두는 지역경제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성장실에 두는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산업자원안보실에 두는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에 두는 신통상전략지원관,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에 두는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다자통상법무관</u>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③ ----- ----- ----- -----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포함 다) 및 제29조의2----- -----.
--	---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u>덤핑조사과</u> 및 <u>불공정무역조사과</u> 외에 배정할 수 없다.	② ----- ----- ----- <u>덤핑조사과</u> , <u>덤핑조사지원과</u> , <u>불공정무역조</u> <u>사과</u> 및 <u>판정지원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7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u>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u>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 - <u>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정책실에 두는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 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기위원회 사무국 및 화학물질안전원</u> ----- ----- <u>두는</u>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③ ----- ----- ----- -----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포함 다) 및 제29조의2-----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 정책관, <u>근로기준정책관</u> 및 중 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 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 정책관, <u>근로기준정책관</u> 및 중 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 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u>근로기준정책관, 산업안 전보건정책실에 두는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산업보건보상정책 관, 안전보건감독국, 지방고용 노동관서</u>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u>포함한</u> <u>다</u>),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u>포함한</u> <u>다</u>),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u>포함한</u> <u>다</u>) 및 제29조의2-----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중소기업정책실에 두는 글로</u> <u>벌성장정책관, 기술혁신정책관,</u> <u>창업벤처혁신실에 두는 창업정</u>

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u>인재정보기획관 및 인재채용</u> <u>국</u>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 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 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 -- <u>인재정보기획관, 인재채용</u> <u>국, 윤리복무국 및 소청심사위</u> <u>원회</u>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포함 한다) 및 제29조의2-----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통계서비스국, 국가데이터관</u> <u>리본부에 두는 국가데이터기획</u> <u>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u> <u>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u>

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
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u> <u>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u> <u>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u> <u>단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u>

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
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기획조정관 및 디지털공정조</u> <u>달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u> <u>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u>

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
조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병역자원국 외에 배정할 수</u> <u>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u> <u>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u> <u>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u>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생략)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u>74명(5급 46명, 6급 21명, 연구관 7명)</u> 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 ----- ----- ----- <u>65명(5급 37명,</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생략)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u>37명(5급 19명, 6급 13명, 연구관 5명)</u> 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③ ----- ----- ----- ----- ----- <u>36명</u> <u>(5급 18명,</u> ----- -----

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
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
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
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
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
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
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감염
병정책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안전예방국 및 수도권질병

대응센터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u> <u>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u>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u> <u>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u> <u>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u> <u>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u> <u>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u> <u>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u> <u>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u> <u>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u> <u>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u> <u>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u> <u>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u> <u>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u> <u>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u> <u>은 경쟁정책국, 시장감시국, 카</u> <u>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및</u> <u>경제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u> <u>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u>

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 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 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 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 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 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 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
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60</u>	<u>752</u>	-8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8</u>	+8
·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22</u>	<u>1,006</u>	-16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6</u>	+1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66</u>	<u>559</u>	-7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7</u>	+7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3</u>	<u>171</u>	-2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2</u>	+2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80</u>	<u>671</u>	-9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9</u>	+9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13</u>		<u>1,600</u>	-13
전문직공무원			<u>13</u>		<u>26</u>	+13
	.		.		.	
	.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9</u>	<u>328</u>	-1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u>	+1
·	·	·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27</u>	<u>1,124</u>	-3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3</u>	+3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8</u>	<u>652</u>	-16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6</u>	+16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7</u>	<u>644</u>	-3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3</u>	+3
•	•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19</u>	<u>2,612</u>	-7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7</u>	+7
•	•	•	
•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4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9</u>	<u>699</u>	-60
전문직공무원	<u>18</u>	<u>78</u>	+60
·	·	·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4급 이하			<u>52</u>		<u>45</u>	-7
전문직공무원			<u>5</u>		<u>12</u>	+7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6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91</u>	<u>753</u>	-38
전문직공무원	<u>17</u>	<u>55</u>	+38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4</u>	<u>619</u>	-5
전문직공무원	<u>3</u>	<u>8</u>	+5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447</u>	<u>9,352</u>	-95
전문직공무원	<u>4</u>	<u>99</u>	+9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4</u>	<u>592</u>	-2
전문직공무원	<u>2</u>	<u>4</u>	+2
·	·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920</u>	<u>2,904</u>	-16
전문직공무원	<u>6</u>	<u>22</u>	+1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92</u>	<u>489</u>	-3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3</u>	+3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94</u>	<u>387</u>	-7
전문직공무원	<u>10</u>	<u>17</u>	+7
·	·	·	

[별표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3</u>	<u>160</u>	-3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3</u>	+3
•	•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95</u>	<u>690</u>	-5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5</u>	+5
·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10</u>	<u>1,505</u>	-105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05</u>	+105
·	·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53</u>	<u>549</u>	-4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4</u>	+4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85</u>	<u>275</u>	-10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0</u>	+10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6</u>	<u>626</u>	-20
전문직공무원	<u>57</u>	<u>77</u>	+2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71</u>	<u>462</u>	-9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9</u>	+9
·	·	·	

[별표 5]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00</u>	<u>899</u>	-1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u>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09</u>	<u>689</u>	-20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20</u>	+20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031</u>	<u>33,013</u>	-18
<u>전문직공무원</u>	<u><신 설></u>	<u>18</u>	+18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6